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정 2011. 1. 1.	개정 2017. 5. 8.
개정 2012. 2. 1.	개정 2017. 9. 25.
개정 2012. 3. 27.	개정 2018. 1. 26.
개정 2013. 5. 29.	개정 2019. 6. 27.
개정 2014. 4. 23.	전부개정 2020. 4. 23.
개정 2014. 10. 6.	개정 2021. 1. 14.
개정 2014. 11. 27.	개정 2021. 4. 14.
개정 2015. 12.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선발계획 작성 등) 매 학기 말에 다음 학기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작성하고 공지하여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장학재원 배정안 통보) 매 학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학재원 배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각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1. 장학생 선정기준
2. 급수별 장학금 지급액
3. 장학금의 종류별 배정안
4. 기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업료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수업료
2. 수업료Ⅱ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 중 수업료를 제외한 그 밖의 납부금

제 2 장 교내 장학금

제1절 학사과정 교내 장학금

제5조(Premier장학금) ① 매 학년도 신입생으로서 입학성적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한다.

② Premier장학금은 수업연한 동안 계속지원조건을 유지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1. 매 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2. 매 학기 학비보조금 300만원 지급. 단, 학·석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사과정만 지급
3. 대학생활원 우선배정
4. 해외 장·단기 파견(2학년)
5. 해외봉사·체험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가산점 부여)
6.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③ Premier장학생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받기 해서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이어야 하며, 1회 성적미달 시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며, 2회 성적미달 시 영구탈락 한다. 단, 당해학기 말 성적이 3.5이상인 경우 학비보조금은 지급한다(영구탈락자 제외).

④ Premier장학생이 졸업 후 2년 이내에 본교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계속지원조건을 유지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의) 석사과정 4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6조(나노생명특별장학금) 매 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표된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기간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국가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외손 포함) 등에게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1(70/100)이상인 경우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면제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1(70/100)이상인 경우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면제한다.

④ 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지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1학기는 4월 말일, 2학기는 9월 말일까지 국가보훈처 및 통일부에 보고한다.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장학금) ① 장애등급이 1~3급인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에게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당해 학기에 한하여 성적에 제한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② 장애등급이 4~6급인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에게 수업연한 동안 수업료Ⅱ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 한하여 성적에 제한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제9조(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에게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교환학생장학금) ① 국내·외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등록금 전액과 기타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교환학생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고시합격자장학금) ① 재학 중 국가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기술고시·사법고시·5급이상 지방고시)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게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국가고시장학생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위원회 인정자 장학금) 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급수 및 지원기간을 정한다.

제13조(공학교육인증장학금) 공학교육인증 관련 아래와 같은 활동의 참가실적이 우수한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이상인 경우 교육인증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수업료Ⅰ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 참가한 자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한 자
3. 공학교육인증 학생 포트폴리오 작성 우수자
4. 지도교수와의 면담에 성실히 임한 자

제14조(학사과정 외국인유학생장학금) 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외국인 신(편)입생 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은 [별표1]의 자격기준과 장학금액에 따라 지급한다.

2. 한국어능력(TOPIK) 장학금 : 외국인학생이 재학 중 한국어능력(TOPIK) 4급이상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재취득한 경우, 당해 학기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학생 1인당 장려금은 최대 3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형제자매장학금) 학사과정에 있는 재학생의 형제자매가 신(편)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신입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업료Ⅱ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수혜 학기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적 중 이어야 한다.

제16조(학군사관후보생 장학금) ① 학군사관후보생 중 학업성적 및 군사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이상인 경우 학군단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수업료Ⅰ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학군사관후보생 장학금은 후보생의 자격이 박탈될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한다.

제17조(근로봉사장학금) 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5이상인 학생 중에서, 원칙적으로 근무희망부서에 지원한 학생의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홍보대사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선발한다. 단, 신입생은 1학년 2학기부터 선발한다.

② 근로봉사장학생은 학기 중 매 학기 4개월에서 6개월간 학기당 160시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학기간 동안 2개월간 월 80시간 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로내용, 근로장소, 작업시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기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학기 중 근로는 1일 2시간 이상, 방학 중 근로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④ 근로봉사장학생은 근무시간에 따른 근로수당(별도로 정한다)을 지급하며, 근로수당은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18조(학사과정 성적우수장학금) ① 성적우수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대학에 배정하되, 신입생은 당해 학기에 한해 대학본부(학생과)에서 일괄 배정한다.

② 성적우수장학금은 학업성적, 공인외국어성적, 사회봉사, 학교생활의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학과(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천하되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성적우수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등록금 전액, 수업료Ⅱ 전액, 수업료Ⅱ 반액 및 수업료Ⅰ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9조(학사과정 학업지원장학금) ① 학업지원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

조에 의거 배정액을 산정하고,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한다.

② 학업지원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학업지원장학금은 학생의 경제적 사정 및 학업성적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④ 학업지원장학생에 대한 세부기준은 매년 최저생계비 및 건강보험료 기준액 등을 참고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학사과정 봉사장학금) 총학생회 및 부산대언론사 간부 등 학생 자치활동을 하면서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되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포상장학금) 특별포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특별포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장학금액을 지급한다.

제22조(학업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 성적우수자, 인문100년 장학생, 지방인재장학생 등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유니웰장학금) ① 아동복지시설 출신의 재학생에게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8이상인 경우 등록한 학기에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립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에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 지급한다.

② 예산에 따른 매월 지급액 및 대상자의 세부기준 등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제24조(남안장학금) ①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를 선발하되, 장학금액 및 기간은 예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남안장학금을 계속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1회 성적미달 시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며, 2회 성적미달 시 영구탈락 한다.

③ 남안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고 복학 후 지급한다.

제2절 대학원과정 교내 장학금

제25조(대학원과정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외국인 신입생 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은 [별표2]의 자격기준과 장학금액에 따라 지급한다.

제26조(대학원과정 성적우수장학금) ① 성적우수장학금은 대학원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대학원에 배정하여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② 성적우수장학금은 학업성적, 공인외국어성적, 사회봉사, 학교생활의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학과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천하되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단,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는 2.5이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2.3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성적우수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등록금 전액, 수업료Ⅱ 전액, 수업료Ⅱ 반액 및 수업료Ⅰ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7조(우수졸업자 대학원 진학 장학금) ① 본교 출신 학사과정 졸업 전체평점평균 3.8이상 학생이 졸업 후 2년 이내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에 진학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기초학문분야(인문사회·자연과학계열) : 석사과정 1~4학기 동안 수업료Ⅱ 반액

2. 응용학문분야(공학·의학·예체능계열) : 석사과정 1~2학기 동안 수업료Ⅱ 반액

② 우수졸업자 대학원 진학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이상이어야 하며, 1회 성적미달 시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며, 2회 성적미달 시 영구탈락한다.

제28조(학·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장학금) ① 본교 학·석사 연계과정 또는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에 입학한 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1. 기초학문분야(인문사회·자연과학계열) 학·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생은 계속지원조건을 유지할 경우,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2. 응용학문분야(공학·의학·예체능계열)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석사과정 첫 학기에,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생은 통합과정 첫 학기와 네 번째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② 기초학문분야 학생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이상이어야 하며, 1회 성적미달 시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며, 2회 성적미달 시 영구탈락한다.

제29조(석사과정 인문100년 장학금) ① 본교 학부 인문100년 장학생이 학사과정 졸업 후 2년 이내에 본교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계속 지원조건을 유지할 경우,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석사과정 인문100년 장학생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이상이어야 하며, 1회 성적미달 시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며, 2회 성적미달 시 영구탈락한다.

제30조(대학원과정 학업지원장학금) ① 학업지원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의거 배정액을 산정하고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② 학업지원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단,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는 2.5이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2.3이상)

③ 학업지원장학금은 학생의 경제적 사정 및 학업성적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④ 학업지원장학생에 대한 세부기준은 매년 최저생계비 및 건강보험료 기준액 등을 참고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장학조교 및 연구조교 장학금) ①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는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연구소, 부속기관 포함)는 유사한 관련학과(특수대학원 포함)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신입생은 해당학과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생은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단,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석사과정은 2.5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은 2.3이상인 자)
3. 정규 직장을 가진 자는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②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의 인원배정과 근무시간, 지급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교체(포기) 시에는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미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교체의 경우에는 반환한 금액을 신규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단, 학기 중 교체는 수업일수 이내에서 가능하다.)

제32조(대학원과정 봉사장학금)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의 자치활동을 하면서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되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학사과정 장학제도와 동일한 장학금) 제2장 학사과정 교내 장학금 중 장학위원회 인정자 장학금, 포상장학금은 대학원과정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3 장 교외 장학금

제34조(기관 자체사업비재원 장학금) ① 학내 각 기관은 자체 사업비로 부담하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국고지원장학금) ① 국가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정부초청 외국인 학생 등 국고지원 사업의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한다.

제36조(기부금장학금) ① 교외기관(인사)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교외기관(인사)이 장학생 선발기준을 지정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으로부터 해당 기준에 의한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단, 그 기준이 불법·부당한 경우에는 기준을 재요청한다.
2. 교외기관(인사)의 별도 선발절차 후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고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1]을 제출받아 지급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이 「학칙」 제61조에 따른 학사경고 및 유급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교외기관(인사)이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별 교외장학생의 비율을 고려하여 학생처장이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대학(원)장은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중에서 소득분위 및 성적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추천한다.

② 교외기관(인사)이 기부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제 4 장 장학금의 반환 및 기타

제37조(장학금의 반환) 장학금 수혜자의 자퇴, 제적, 사망 및 중도 포기에 따른 장학금 반환의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38조(장학금 정보공개) 교내·교외장학금의 선발·추천기준 및 선발결과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단, 특정인의 수혜내역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9조(업무처리기준) 이 지침과 관련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1) (폐지) 기존 시행중인 등록금재원장학생 선발지침은 폐지한다.
- (2)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시행)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2. 2. 1.)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2. 3.27.)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3. 5.29.)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4. 4.23.)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4.10. 6.)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4.11.27.)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5. 12. 28.)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7. 5. 8.)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7. 9. 25.)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8. 1. 26.)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9. 6. 27.)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0. 4. 24.)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1. 1. 14.)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1. 4. 14.)

[별표 1] 학사과정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선발 자격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장 학 금 액	수 혜 기 간
신입생 편입생	교내입학전형	한국어능력 6급	등록금 전액	첫 학기
		한국어능력 5급	수업료Ⅱ 전액	
		한국어능력 4급	수업료Ⅰ 전액	
	현지특별입학전형	현지특별전형 합격자 중 입학성적 우수자	등록금 전액	등급에 따라 계속지원
재학생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 및 국제교류본부장이 인정한 학생	한국어능력 4급 이상 또는 일정수준의 영어성적(TOEFL 550·CBT 210·iBT 80·IELTS 5.5·NEW TEPS 326·TOEIC 675 이상) 취득자 중 성적 우수자	등록금 전액, 수업료Ⅱ 전액, 수업료Ⅱ 반액, 수업료Ⅰ 전액	해당 학기
	그 외	한국어능력 4급 이상 취득자 중 성적 우수자		

[별표 2] 대학원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선발 자격기준(제24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장 학 금 액	수 혜 기 간
신입생	본교 졸업 후 석사 또는 박사 입학자	수업료Ⅱ 전액	첫 학기
	한국어능력 4급 이상 또는 일정수준의 영어성적(TOEFL 550·CBT 210·iBT 80·IELTS 5.5·NEW TEPS 326·TOEIC 675 이상) 취득자	수업료Ⅱ 반액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7이상인 자	수업료Ⅱ 반액	해당 학기

[별표 3] 장학금 반환 기준(제36조 관련)

구분			반환 기준
재적생 (자퇴, 제적, 포기)	교내 장학금	Premier 장학금	○(학기 중) 직전학기 학비보조금 전액 반환,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차등 반환 ○(학기이수 후) 직전학기 학비보조금 전액 반환 단, 학비보조금 미반환 시에는 자퇴처리 불가
		학·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장학금	해당 과정을 포기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장학금 전액 반환. 단, 학기의 기준은 「학칙」 제33조에 따른다.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 장학금	교체(포기) 시에는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미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 반환
		그 외 장학금	○(학기 중) 장학금 전액 반환 단, 근로대가성 및 포상금 성격의 장학금은 미반환 ○(학기이수 후) 미반환
	교외장학금		재단(출연자) 처리기준 적용. 단, 처리기준이 없을 경우 교내장학금 반환기준 적용
사망 제적생	교내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미반환
		기타장학금	사망 시점 이후 수혜한 장학금에 한해 반환
	교외장학금		재단(출연자) 처리기준 적용. 단, 처리기준이 없을 경우 교내장학금 반환기준 적용

[별지 1](제35조제1항2호 관련)

교외기관과 수혜 지정 장학생 간 이해관계 확인서

교외기관 (재단, 개인)	재단(기업)명		
	대표자(개인)		
	장학담당자		
	연락처		
	E-mail		
장학 수혜 지정 장학생	학과	학번	이름
확인 사항	본 재단(본인)은 상기 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장학생을 추천 요청함에 있어, 본 재단(본인)과 상기 학생 간에 이해관계가 없으며,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이사장 또는 대표(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 ‘교외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영리 법인 및 비영리 법인(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및 재단)
- 법률에 의한 장학법인체 허가를 받지 않고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단체